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83호 2022. 10. 2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60호 거창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13호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10
 거창군 고시 제2022-114호 도로명주소 고시 11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435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거창군 공고 제2022-1442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7
 거창군 공고 제2022-1443호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유원지)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
 거창군 공고 제2022-1446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2
 거창군 공고 제2022-1459호 수승대관광지 CCTV 설치 행정예고 35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2년 10월 26일

거창군 훈령 제460호

거창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군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회 기능) ① 법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간사)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소관 사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1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 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서면심의)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토 의견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건					
일시				
심의 결과					
구분	성명	심의 의견			서명
		찬성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거창군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

2. 청원 요지

가.

나.

3. 개최 이유

가.

나.

4. 요청 시기

5. 검토 의견

거창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추진계획

❖ 청원법령 시행(2021. 12. 23.)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거창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코자 함

I 제정 이유

1.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원 처리 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청원법 개정·시행
2.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한 청원법령 준수를 위해 운영 규정 마련

II 주요 내용

1.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 나.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2. 청원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가. 심의회는 위원장(부군수)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가 위촉한다.
3.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가.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청원심의회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가.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최 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거창군 고시 제2022-113호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1,888백만원(국비 1,441, 도비 134, 군비 313)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 안전 인프라 개선
 -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6. 사업기간 : 2021. ~ 2024.
7.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940-8272)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44)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2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65-24 등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2. 개정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폐쇄로 분뇨 수거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율에 가깝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1) 수거식 화장실

가) 10리터 기준 174원 ⇒ 185원

나) 11원 인상, 인상률 6.3퍼센트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가) 기본요금

(1) 750리터까지: 17,100원 ⇒ 20,080원

(2) 2,980원 인상, 인상률 17.4퍼센트

나) 초과요금

(1) 100리터마다: 1,150원 ⇒ 1,350원

(2) 200원 인상, 인상률 17.4퍼센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20. ~ 2022. 11. 9.(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11

- FAX : 055)940-37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85원	15원	200원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20,080원	1,125원	21,205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50원	150원	1,500원

비고

1. “수집·운반” 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
2. “처리” 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말함

거창군 공고 제2022 - 1442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북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대시설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설치대상지 및 규모

연번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비고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5번지 일원 북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녹지휴식공간 내	5대	

4. 공고기간 : 2022. 10. 24. ~ 2022. 11. 14.(21일간)
5. 의견제출 : 2022. 10. 24. ~ 2022. 11. 14.(21일간)
6.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게시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0147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22,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농촌개발담당)

▶ 전 화 : 055)940-8272

▶ 팩 스 : 055)940-822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우편으로 의견제출시 기한 내 도달 기준임(공고기간 내 도달)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행정 예고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거창군수 귀하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유원지)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유원지)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4.

거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유원지) 결정(변경) 및 거창창포원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 공간적 범위

구분	위치	면적(m ²)
계획지구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2번지 일원	43,136

- 계획수립권자 / 승인기관 : 거창군 환경과 / 거창군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3.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1. 10. 24. ~ 2022. 11. 06.(14일간)
- 공개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4.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거창군 환경과로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환경과(☎055-940-8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유원지) 결정(변경) 및 거창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사업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2번지 일원	
사업자	거창군 환경과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 7. 5.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안 제4조)

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5조)

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안 제7조, 제8조)

바.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사.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규정 등(안 제10조~제13조)

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협력·교육·홍보 등(안 제16조, 제17조)

4. 예고기간 : 2022. 10. 24.(월) ~ 11. 14.(월)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14.(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2) 전화 055-940-3032, 팩스 055-940-3029, 이메일 yangda00@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거창군 균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거창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거창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3. 「건강가정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4.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거창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거창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거창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거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거창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거창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 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관 련 법 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 목표를 말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려는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수승대관광지 CCTV 설치 행정예고

수승대관광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6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수승대관광지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청
3. 행정예고기간 :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수승대관광지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 설치위치

구 축 장 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운 영 기 관	비고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5	24시간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거창수승대관광지관리센터)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은하리길 2 거창수승대관광지관리센터
- 팩스 : 055-940-854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 055-940-8532

의견제출서

행정예고명	수송대 관광지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제출 내용		
수송대관광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